보은군 공고 제2021-774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지방세 체납자의 회원권을 압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『압류통지서』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내용 : 회원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1. 6. 10. ~ 2021. 6. 25. (15일간)
3. 공시송달 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4. 공시송달 대상자 : 별첨
5. 공시송달내용

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자의 회원권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,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보은군청 재무과(043-540-3153)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1년 6월 9일

보 은 군 수